

강남구립도서관(전자도서관) 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2. 3. 22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571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4. 강남구청장(문화체육과)
- 나. 상정의결
 -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3. 22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뉴디자인국장 : 김희주)

- 가. 제안이유
 - 전자도서관의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에 재계약하기 위하여 『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2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.
- 나. 주요내용
 - 위탁사무명 : 전자도서관 운영
 -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1) 추진근거
 - 「도서관법」 제27조(공공도서관 설치 등)
 -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17조(공공도서관의 설립·육성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) 및 제12조(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사업) 및 제27조(사업의 대행 등)

2) 필요성 :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강남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의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도서관 양적·질적개선 도모

○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1) 위탁 대상 사무 : 전자도서관 운영

2) 위탁 범위

- 위탁대상시설(홈페이지, 서버 등) 관리 및 운영
- 도서 열람·대출 관련 업무, 전자도서자료 관리
- 도서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
-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

○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 등)

구 분	소재지	면 적	규 모
전자도서관	http://ebook.gangnam.go.kr	도곡정보문화도서관 내	348,173권

○ 위탁기간 : 2022. 4. 1. ~ 2027. 3. 31. (5년)

○ 위탁기관 : 강남문화재단

○ 위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1) 위탁예산 : 연간 42,048천원[구비 100%]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인건비(명)	운영비
전자도서관	42,048	16,020(1)	23,328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도서관법」 제27조(공공도서관 설치 등)
-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17조(공공도서관의 설립·육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) 및 제12조(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사업) 및 제27조(사업의 대행 등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 강남구 도곡로18길 57(도곡동 896-2)에 위치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내에 위치한 전자도서관은 2001년 개관하여 강남구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3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(9년 3개월) 위탁·운영하고 있음.

□ **전자도서관 위탁연혁**

- 2001년: 강남구전자도서관 개관[5개 초등학교, 지정석(지정PC)에서만 이용가능]
- 2002년: 11개소 초등학교로 확대
- 2005년: 강남구전자도서관 전용서버 구입 및 사이트 구축
- 2009년: 강남구전자도서관 시스템고도화 개편
- 2010년: 초등학교 독후활동 지원시스템 구축

- 2011년: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 시작
- 2013년~현재: 강남문화재단 위탁운영(2012년까지 구에서 직접 운영)

□ 전자도서관 운영현황

- 소재지: 도곡로18길 57(도곡동 892-6) 도곡정보도서관 내
- 규모: 지상 3층 디지털도서관
- 이용대상: 강남구민, 강남구 재학·재직자
- 소장도서: 25,580종 348,157권
- 누적회원 수 : 127,345명
- 사이트 주소 : <http://ebook.gangnam.go.kr/>
- 개관일 : 2013. 3. 19.

구분	보유장서(권)	예산액	운영인력	월대출권수	월이용인원
전자도서관	348,157권	42,048천원	1명	11,822권	6,942명

□ 세부운영내역

- 이용방법 : 대출권수 5권, 대출기간 5일<예약 없는 경우 1회 5일 연장>
- 전문직원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

구분	고객지원센터	전문직원
업무내용	-콜센터 운영(회원가입, 개인환경 장애 등 민원처리 및 고객 맞춤서비스 제공) -원격기술지원 -전자책 탑재기술관리(리더 장애 복구요청 및 조치관리 등) -전자책 오류 관리	-전자책 파일 전수조사 통해 보유전자책 품질 확인 -도서 구매시 이용자 희망도서 관리 -수서도서 복본조사 -도서정보 DB관리 -홈페이지, SMS 관리 등

- 이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문화재단 조례”)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자도서관을 5년간(2022.4.1.~2027.3.31.)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<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> 내용과 동일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음.

- 전자도서관은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도서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관리자인 사서¹⁾를 두지 않고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만 두고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, 서버관리, 전자도서 민원처리 및 자료 관리가 주요 업무로 되어 있음.

1) 도서관법

제6조(사서 등) ①도서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,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강남구립도서관(전자도서관) 위탁 동의안. 끝.

강남구립도서관(전자도서관)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7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3. 4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문화체육과

1. 제안이유

전자도서관의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에 재계약하기 위하여 『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2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전자도서관 운영

나.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가) 「도서관법」 제27조 (공공도서관 설치 등)
- 나)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17조 (공공도서관의 설립·육성)
- 다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라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- 마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
- 바)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 (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) 및 제12조(운영의 위탁)
- 사)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사업) 및 제27조(사업의 대행 등)

2) 필요성 : 도곡정보문화도서관, 전자도서관 등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강남문화재단에 전자도서관 운영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양적·질적 개선 도모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1) 위탁 대상 사무 : 전자도서관 운영
- 2) 위탁 범위
 - 가) 위탁대상시설(홈페이지, 서버 등) 관리 및 운영
 - 나) 도서 열람·대출 관련 업무, 전자도서자료 관리
 - 다) 도서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
 - 라)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 등)

구 분	소재지	면 적	규 모
전자도서관	http://ebook.gangnam.go.kr	도곡정보문화도서관 내	348,173권

마. 위탁기간 : 2022. 4 . 1.~2027. 3. 31.(5년)

바. 위탁기관 : 강남문화재단

사. 위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

아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1) 위탁예산 : 연간42,048천 원[구비 100%]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인건비(명)	운영비
전자도서관	42,048	16,020(1)	23,328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○ 도서관법

제27조(설치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·군·구(자치구인 구를 말한다)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“도서관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○ 도서관법 시행령

제17조(공공도서관의 설립·육성)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공공도서관(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)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, 분관(分館),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

① 출자·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5조(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)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진흥을 위해 필요시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그 업무를 개인, 비영리 법인·단체 및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“라 한다)를 선정하되, 도서관이나 교육문화사업의 관리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한다.

③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.

④ 구청장은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자료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 및 운영실적 평가의 배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⑦ 수탁자 선정 시 위·수탁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사업)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7.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·관리

제27조(사업의 대행 등)

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.

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,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